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울지방<br>고용노동청 | 02)2231-0009 | 서울남부지청 | 02)2639-2100 |
| 서울강남지청        | 02)584-0009  | 서울북부지청 | 02)950-9880  |
| 서울동부지청        | 02)403-0009  | 서울관악지청 | 02)3281-0009 |
| 서울서부지청        | 02)713-0009  |        |              |
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중부지방고용노동청 | 032)460-4545 | 안산지청  | 031)412-1992 |
| 인천북부지청    | 032)540-7910 | 평택지청  | 031)646-1114 |
| 부천시청      | 032)714-8700 | 강원지청  | 033)269-3551 |
| 의정부지청     | 031)877-0009 | 강릉지청  | 033)650-2500 |
| 고양지청      | 031)931-2800 | 원주지청  | 033)769-0800 |
| 경기지청      | 031)259-0204 | 태백지청  | 033)552-0009 |
| 성남지청      | 031)788-1505 | 영월출장소 | 033)374-0009 |
| 안양지청      | 031)463-7300 |       |              |
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부산지방고용노동청 | 051)853-0009 | 울산지청 | 052)272-0009 |
| 부산동부지청    | 051)559-6688 | 양산지청 | 055)387-0009 |
| 부산북부지청    | 051)309-1500 | 진주지청 | 055)752-0009 |
| 창원지청      | 055)239-6500 | 통영지청 | 055)650-1951 |
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대구지방고용노동청 | 053)667-6200 | 구미지청 | 054)450-3500 |
| 대구서부지청    | 053)605-9000 | 영주지청 | 054)639-1111 |
| 포항지청      | 054)271-6700 | 안동지청 | 054)851-800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광주지방고용노동청<br>(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) | 062)975-6200<br>064)728-6100 | 군산지청 | 063)452-0009 |
| 전주지청                      | 063)240-3400                 | 목포지청 | 061)280-0100 |
| 익산지청                      | 063)839-0008                 | 여수지청 | 061)650-0108 |
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대전지방고용노동청 | 042)480-6290 | 충주지청  | 043)840-4000 |
| 청주지청      | 043)299-1114 | 보령지청  | 041)931-6640 |
| 천안지청      | 041)560-2800 | 서산출장소 | 041)661-5630 |

## 07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

2022년도 최저임금 위반 예시

### 예시 - 시간급인 경우

시간급 9,000원을 받는 경우  
 시간급 9,000원 < 시간급 9,160원

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,160원보다 적으므로 **최저임금법 위반임**

### 예시 - 일급인 경우

1일 8시간 근로하고  
 일급 72,000원을 받는 경우  
 72,000원÷8 < 시간급 9,160원

72,000원÷8시간=9,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,160원보다 적으므로 **최저임금법 위반임**

### 예시 - 주급인 경우

1일 4시간, 1주(5일) 간 총 20시간 근로  
 (개근)하고 주급 216,000원을 받는 경우  
 216,000원÷24시간 < 시간급 9,160원

216,000÷24시간(1주 20시간+유급휴휴 4시간)=9,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,160원보다 적으므로 **최저임금법 위반임**

### 예시 - 월급인 경우

1주 40시간(주 5일, 1일 8시간)을  
 근로하고 월급 1,881,000원을  
 받는 경우  
 1,881,000원 ÷209시간 < 시간급 9,160원

#### [최저임금법 위반]

※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=약 209시간  
 ((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+유급휴휴 8시간)×365÷7)=12월=약 209시간

1주 44시간(월~금 8시간, 토 4시간)을 근로하고  
 (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) 월급 2,034,000원을 받는 경우

2,034,000원 ÷226시간 < 시간급 9,160원

#### [최저임금법 위반]

※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=약 226시간  
 ((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+유급휴휴 8시간)×365÷7)=12월=약 226시간

### 주휴수당 알아보기

#### 주휴수당이란?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. 주 5일,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#### 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,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,160원



## 최저임금은

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
※ 2022.1.1.~2022.12.31. 적용

시간급  
**9,160원**



### [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]

상담 : 국번없이 1350

위반신고 :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

##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?

-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-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·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청소년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)는 모두 적용됩니다.
- 다만,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?

-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[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(단순 노무종사자)에 해당하는 사람]는 수습여부·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%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
### Q.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?

-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
- 다만,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
- 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는 임금
-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
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기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,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
-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%(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)이내
-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%(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)이내
-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
-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(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)

| 연도        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 '23년 | '24년     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
| 미산입 비율 상여금 | 25%  | 20%  | 15%  | 10%  | 5%   | 0%(전부 산입) |
| 복리후생비      | 7%   | 5%   | 3%   | 2%   | 1%   | 0%(전부 산입) |

### ※“최저임금 월 환산액”이란?

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
 •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, 유급 주휴 8시간인 경우  
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: 209시간\*  
 \*(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+유급주휴 8시간)×365÷7=12월=약 209시간  
 •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,160원×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수(209시간)  
 =1,914,440원

###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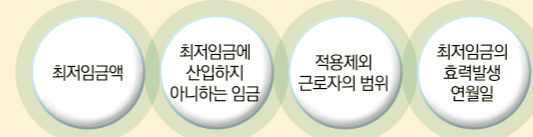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(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)의 의견청취 필요



## 0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
-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### ■ 알려야 할 내용



## 0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,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05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?

-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## 0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

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,105,000원을 받는 경우

| 월급명세서          |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기본급 1,500,000원 | 기본급 1,500,000원   |
| 직무수당 150,000원  | 직무수당 150,000원    |
| 교통비 100,000원   | 식대·교통비 161,710원* |
| 식대 100,000원    | 상여금 0원*          |
| 시간외수당 130,000원 |                  |
| 상여금 125,000원   |                  |
| 계 2,105,000원   | 계 1,811,710원     |

\*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% (1,500,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)

\* 상여금 125,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,914,440원의 10%(191,444원) 초과금액  
 \* 식대·교통비 200,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,914,440원의 2%(38,288원) 초과금액

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

1,811,710원 ÷ 약 209시간 ≈ 8,668원 < 9,160원

▶ 최저임금 위반

2021.11.19. 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